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명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상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시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 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본조례 제22조제2항을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본 개정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